##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67

발의연월일: 2021. 11. 8.

발 의 자:서범수・구자근・이 영

이태규・최춘식・추경호

김상훈 • 이명수 • 이종성

김용판 · 김형동 의원

(11일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 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하고 있고,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사용률이 저조하여 그 효과가 미비하고, 어플리케이션 간 기능의 중복으로 실질적인 운영가치가 매우 낮음 상황임.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, 오

히려 무분별한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여 상당한 행정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의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2항·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의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-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방안의 변경 등에 관한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	제23조(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
관리) ① (생 략)	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
	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
	<u>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</u>
	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
	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
	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
	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
	<u>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
	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방안
	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행정기
	관등의 장에게 개선방안의 변
	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
	<u>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
	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
	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전자정부서비스의	⑤ 그 밖에
통합 또는 폐기 등의 기준 및	
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,	
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	

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	
통령령으로 정한다.	